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
----------	----

2018. 10. 24.(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1일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기준 적용,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차 없는 날 운영, 자동차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운전 확산운동 전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3. 검토보고 요지

###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충북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08), 광주(`09), 인천(`10), 경북(`18)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임.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등 도지사와 사업자 그리고 도민의 책무를 정하였음.
- 안 제6조는 환경부 권고사항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17년 예산으로 용역실시 중에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칭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08), 광주(`13), 충남(`15), 인천(`17)에서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안 제19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8. 9. 21. ~ `18. 9.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충청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민의 건강 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등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감축”이라 함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5. “기후변화 대응”이라 함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내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7.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8. “승용차 요일제”란 도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도민자율운동을 말한다.

9. “친환경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제6조(지방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이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감축 목표 설정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 수립

③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감축수단 등을 구체화 하고 이행성과 점검체계를 포괄하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시에는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세부이행계획은 충청북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기준 적용)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기준 준수 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차 없는 날) ①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 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운전 확산운동 전개) 도지사는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도지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함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도민·사업자·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 활동, 해외조림·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7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7. 11. 28.>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

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

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